

대전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나1202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나12023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단11782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전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철희

변론종결 2023. 3. 8.

판결선고 2023. 4. 5.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단11782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A과 피고 사이에 2019. 10. 11. 체결한 매매계약을 10,757,1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757,14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2015. 4. 20.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A 소유의 책임재산이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15. 4.경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친언니 K의 알선으로 A의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면서 A으로부터 차용한 30,000,000원에 대한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9. 10. 22. 대여금을 모두 변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A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2715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나 1~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11, 13~3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5. 4.경 A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A에게 경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A 소유의 책임재산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A은 2015. 5. 22. 피고의 대출금 9,211,891원을 대신 상환하고 피고에게 20,74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A에게 2019. 6. 17. 5,000,000원, 2019. 8. 8. 5,000,000원, 2019. 10. 22. 12,926,925원을 송금하고, 2019. 10. 22. A에 대한 상환 명목으로 변호사 L의 계좌로 7,073,075원을 송금하여 합계 30,000,000원을 A 측에 지급하였다. 이러한 금전거래내역은 피고가 A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2019. 10. 22.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9. 10.초 A으로부터 A이 받은 신용대출금 중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계좌정보 사진을 전송 받았고, 피고는 A에게 신용대출금의 잔액 상당인 '19,000,000원을 입금하면 나는 다 갚은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가 A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면, A 명의 신용대출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거나 A에게 돈을 '갚는다'는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A'이었던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행동하였다. 피고는 2015. 9. 23., 2015. 11. 26., 2016. 12. 21. 광고 및 구인 소식지 'Q'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을 구하는 광고를 게시하며 광고료를 지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하고, 퇴거하는 임차인이 버리고 간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입금하거나 누수 문제로 인한 공사비용, 배수관 설비공사비용 등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

④ 을 23호증에 의하면, 피고 명의 R조합계좌에서 2015. 9. 23. 24,070원, 2016. 9. 5. 25,000원, 2017. 7. 21. 22,830원, 2019. 3. 25. 24,290원, 2019. 9. 17. 22,080원의 돈을 A의 계좌 또는 거래기록사항에 'A_세종'이라고 기재된 가상납부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정기적으로 납부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2017. 1.경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차임 200,000원을 지급할 계좌로 A의 C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2018. 7. 25.부터 2019. 10. 22.까지 매월 55,000원, 55,500원, 95,000원 등의 금액을 송금하였는바, 피고는 A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이 사건 부동산은 A의 책임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용, 판사 김주연, 판사 조길상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세종특별자치시 M N동

[도로명주소]

세종특별자치시 O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P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조 48.60㎡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충청남도 연기군 M 대 538㎡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538분의 33.625. 끝.

